학술대회 개최 경비지원 내규

제정 2002. 04. 18.
제1차 개정 2007. 10. 29.

제1조(목적) 국내(국제)학술대회 개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국내(국제)간 학술교류를 촉진하여 연구력 확산 및 연구능력을 진흥하고자 한다.

제2조(지원대상) 우리대학 학과(부), 대학 및 연구소에서 주관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로서 단독주관 또는 학회와 공동주관 모두 지원한다. 다만, 교내 연구소 공동 주최 학술행사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.

제3조(지원규모) 학술대회개회에 따른 지원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제학술대회
   주제발표 또는 토론참가자의 국적이 3개국 이상이어야 하며 참가 인원이 50명 이상인 우리학교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: 250만원
2. 전국규모 학술대회
   전국규모 학회가 주최하고 토론 또는 주제발표 등과 같은 학술행사가 있으며 참가인원이 50명 이상인 우리학교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: 150만원
3. 전국규모 학회의 지역지회 또는 분회
   가. 전국규모 학회의 지역지회 또는 분회가 주최하고 토론 또는 주제발표 등과 같은 학술행사가 있으며, 참가인원이 50명 이상인 우리학교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: 50만원
   나. 전국규모 학회의 지역지회 또는 분회는 전국규모학회의 소속으로서 학회운영상 지역적인 지회 또는 분회에서 운영되는 학회를 말한다.

제4조(지원금의 조정) 총장은 매학년초 연구지원 간접경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회개최 지원경비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5조(신청방법 및 지급절차) ① 학회개최가 확정된 후 신청서식에 의거 학회의 공문 및 일정표와 초청장 또는 안내문을 교무처 교무과에 학술대회 개최 15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. (개정 2007.10.29)
② 교무처장은 학회의 규모 및 우리대학에서 개최하는 것을 확인한 후 총장의 재가를 받아 학회개최 경비를 지급한다. (개정 2007.10.29)

제6조(결과보고) 학술대회 개최 종료 후 10일이내에 소정의 결과보고서(학술행사 간행물 및 프로그램) 및 정산서를 교무처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 2007.10.29)

부칙

(1)(시행일) 이 내규는 2002년 4월18일부터 시행한다.
(2)(경과조치) 이 내규 시행 당시 종전의 연구지원간접경비사용내규에 의하여 지원된 학술행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연구지원간접경비사용내규에 의한다.

부칙 (기획예산과-1133호, 2007.10.30)

이 규정은 2007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.